

■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
신청자격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. 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			
추천기관 및 자격 요건	구분	추천기관	자격요건	청약자격 요건
	장애인	인천시청, 서울시청, 경기도청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	청약통장 필요없음
	국가유공자	국가보훈처 인천 보훈지청	국가유공자 /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	
	장기복무 제대 군인	국가보훈처 인천 보훈지청	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	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	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	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
	중소기업 근로자	인천 지방중소벤처 기업청	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	
	북한이탈주민	통일부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 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및 동·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기]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			
제한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※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			